

과태료 부과기준(제2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삭제 <2021. 6. 8.>
- 2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.

- 1) 법령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38조제1항 제1호	250만원	375만원	500만원
나. 법 제14조제3항(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제2항 제1호	50만원	75만원	100만원

다.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5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,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이 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제2항 제2호	50만원	75만원	100만원
라.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의5 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,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 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38조제1항 제2호	250만원	375만원	500만원
마. 법 제24조(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 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	법 제38조제2항 제3호	50만원	75만원	100만원
바.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수 교육을 받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38조제2항 제4호	50만원	75만원	100만원
사. 법 제25조의12에 따른 조치를 취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제1항 제2호의2	250만원	375만원	500만원
아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, 거짓으로 보고·자료제출을 하거나, 출입·검사를 방해·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38조제1항 제3호	250만원	375만원	500만원